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
발 의 자 : 이광재 · 홍기원 · 장종태
전용기 · 조인철 · 오세희
강득구 · 백혜련 · 김남근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임대료의 증액,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,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,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

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
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
항 신설 등).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) ①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의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어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조정안의 수락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56조의2(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) ①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</u> <u>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의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제57조(조정의 효력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7조(조정의 효력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<u>②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.</u>